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6차 법제사법위원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허위영상물등 관련 범죄수익 및 재산에 대한 몰수·추징〉

■ 정준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3313호)

2024. 9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동 찬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정준호의원 등 11인
2. 제 안 일 : 2024. 8. 28.
3. 회 부 일 : 2024. 8. 2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「형법」에 따른 임의적 몰수·폐기 대상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저장매체를 선별적으로 압수하여 범죄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거나 몰수 판결을 선고받아 폐기하고 있음.

그런데 딥페이크 등 피해영상물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법적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,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·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·추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4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,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죄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생긴 범죄 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·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4 신설).

현 행	정준호의원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4(몰수 및 추징) ① 제14조,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(이하 이 조에서 “범죄수익”이라 한다)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,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(價額)을 추징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부터 제10조까지, 제10조의3, 제10조의4, 제11조, 제12조를 준용한다.</u>

□ 현행 「형법」 제48조¹⁾에 따른 몰수는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 권리인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총체인 재산 자체를 몰수의 객체로 설정할 수 없음.

○ 이에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수익과 그로 인한 파생적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의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범죄수익은닉규제법」”) 등 다수의 특례법²⁾은 재산 자체에 대한 몰수·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구체적으로 「범죄수익은닉규제법」 제2조³⁾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

-
- 1) 제48조(몰수의 대상과 추징)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.
1.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
 2.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
 3.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
-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(價額)을 추징한다.
- ③ 문서, 도화(圖畵), 전자기록(電磁記錄)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.
- 2)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,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,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등
- 3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특정범죄”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(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)
라.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(이하 “중대범죄”라 한다)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「형법」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(想像的 競合)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
 2. “범죄수익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가.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(報酬)로 얻은 재산
3. “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”이란 범죄수익의 과실(果實)로 얻은 재산, 범죄수익의 대가(對價)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,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.
- 제8조(범죄수익등의 몰수)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.

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(報酬)로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몰수·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현행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(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),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) 및 제14조의3의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·강요죄(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)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「범죄수익은닉규제법」에 따른 중대 범죄에 포함되므로, 동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법원의 몰수·추징이 가능함.
- 그런데, 「형법」 제48조와 「범죄수익은닉규제법」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몰수·추징에 관하여 각각 ‘몰수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여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, 몰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됨.
-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성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
1. 범죄수익

2.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

(이하 생략)

제10조(추징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, 사용 상황,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,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(價額)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.

□ 이에 개정안과 같이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·추징을 도입할 경우,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범죄수익을 범인 또는 범인 이외의 자로부터 박탈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를 유발하는 경제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○ 참고로, 「형법」 각칙상 뇌물죄(제134조), 아편에 관한 죄(제206조), 배임수재죄(제357조)의 경우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고⁴⁾, 재산에 관한 몰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중 「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·제16조⁵⁾와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 제3조·제6조⁶⁾는 각각 불법수익등과 불법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, 「관세법」 제282조⁷⁾ 등 일부 개별법에서도 필요적 몰수·추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4) 제134조(몰수, 추징)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.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제206조(몰수, 추징)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,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.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제357조(배임수증재)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.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

5) 제13조(불법수익등의 몰수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. (단서 생략)

1. 불법수익

2.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

제16조(추징)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(價額)을 범인으로부터 추징(追徵)한다.

6) 제3조(불법재산의 몰수) ① 불법재산은 몰수한다.

제6조(추징)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(價額)을 범인에게서 추징(追徵)한다.

7) 제282조(몰수·추징) ① 제269조제1항(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)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.

□ 다만, 몰수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므로 법원은 몰수 대상 물건의 중요성, 피해자의 범익침해 정도, 재범 및 재유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몰수 판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, 필요적 몰수·추징 도입시 사건별 구체적인 타당성을 다소 제약할 우려가 있을 것을 보임.

문 의 처
02-6788-5073